연제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모집 변경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6-제7호(206.11.03)에 의거 2006년11월04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바, 변경공고임
· 시행사 : 당초 : (주)동국건설 변경 ; (주)대광이앤씨 · 시공사 : 당초 : 대주건설(주) 변경 : (주)대광건영
■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도 단위 청약지역확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다만,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 미설시 지역의 거주자는 본 아파트 1,2순위에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노인, 장애인 1층 공급(제18조 제5항) :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구 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전용면적 85㎡이하	없음	없음
전용면적 85㎡초과	없음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제도가 폐지(2012.09.25 이후)되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8694호(2013.03.13)로 입주자 모집변경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17-7 외 1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4층 7개동 총 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24,829.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총 375세대 중 특별공급 87세대 포함
(일반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계
민영주택	2013000156-01	84.6216	84.6216	34.9897	119.6113	30.431	150.0423	60.7002	27	14	27	9	190	267
	2013000156-02	105.6416	105.6416	37.075	142.7166	37.99	180.7066	75.7782	0	6	0	4	98	108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층별 구분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5%	5%	1회(30%)	2회(20%)	3회(10%)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2013.05.03	2013.05.15	2013.08.15	2013.11.15	입주지정일
84.6216	1층(최저층)	18	53,444,354	145,525,646	198,970,000	9,948,500	9,948,500	59,691,000	39,794,000	19,897,000	59,691,000
	2층	19	53,444,354	153,515,646	206,960,000	10,348,000	10,348,000	62,088,000	41,392,000	20,696,000	62,088,000
	3층	20	53,444,354	160,535,646	213,980,000	10,699,000	10,699,000	64,194,000	42,796,000	21,398,000	64,194,000
	4~8층	100	53,444,354	165,535,646	218,980,000	10,949,000	10,949,000	65,694,000	43,796,000	21,898,000	65,694,000
	9층이상	90	53,444,354	169,545,646	222,990,000	11,149,500	11,149,500	66,897,000	44,598,000	22,299,000	66,897,000
	최상층	20	53,444,354	190,535,646	243,980,000	12,199,000	12,199,000	73,194,000	48,796,000	24,398,000	73,194,000
105.6416	1층(최저층)	9	66,719,928	177,240,072	243,960,000	12,198,000	12,198,000	73,188,000	48,792,000	24,396,000	73,188,000
	2층	9	66,719,928	189,250,072	255,970,000	12,798,500	12,798,500	76,791,000	51,194,000	25,597,000	76,791,000
	3층	9	66,719,928	195,250,072	261,970,000	13,098,500	13,098,500	78,591,000	52,394,000	26,197,000	78,591,000
	기준층	72	66,719,928	202,240,072	268,960,000	13,448,000	13,448,000	80,688,000	53,792,000	26,896,000	80,688,000
	최상층	9	66,719,928	230,260,072	296,980,000	14,849,000	14,849,000	89,094,000	59,396,000	29,698,000	89,094,0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주어 당사에서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별도 계약품목 금액에는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5%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출산 장려, 촉진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있지 않음.
· 기관별 실외소음도 측정결과(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조제3항)
○ 측정일시 : 2013.3.4.~3.5.(업체 : 2013.1.9.~1.11) ○ 측정지점 : 2개지점(303동 5층, 307동 8층)
○ 측정횟수 : 각 지점별 주·야간 6회(08,12,15,18,22,00시)

기관별	측정지점	주간[dB(A)]					야간[dB(A)]		
		1회	2회	3회	4회	평균	1회	2회	평균
예측소음도 측정업체	N-1지점(303동5층)	73.7	71.6	71.7	70.2	71.8	68.9	64.6	66.8
	N-2(307동8층)	76.4	74.4	74	72.8	74.4	71.5	68.1	69.8
보건환경 연구원	N-1지점(303동5층)	74.9	72.7	73.8	73.5	73.7	71.4	68.6	70
	N-2(307동8층)	75.1	75.5	74.8	76	75.4	73.4	71.3	72.4

상호	예반솔루션(주)
성명(대표자)	정동근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동) 경기테크노파크 알이이센터 315호

*2003년 최초 사업계획승인시 사업부지 남측의 호남고속도로에 대한 방음대책은 방음벽을 고속도로변에 설치시 방음벽(H=5m, 3m), 불가능시 사업부지경계에 (H=5m→7m, 3m→5m)로 승인조건이 부여되었으나, 동림IC의 신설 및 호남고속도로의 확장계획에 따라 상기 소음측정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문서번호 도로처-759(2013.02.27)참조)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사용검사전까지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한 특별공급 : 2013.3.20(수) (10:00~15:00) / 현장 모델하우스
· 당첨자 선정일시 및 장소 : 2013.3.20(수) (16:00) /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공개 추첨함.
※ 당사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제2항[제1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함)
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 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구 분	84.6216㎡	105.6416㎡	합계
일반 특별공급	27세대	0세대	27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4세대	6세대	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7세대	0세대	2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4세대	13세대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포함)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이내로 총 27세대
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5%범위 이내로 총 20세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자녀수	미성년 자녀(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2)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정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세대구성의 경우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가정 중 하나만 인정한다.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다음 각 3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3.15)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가.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나.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27세대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고시)

구 분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487,531원 이하	5,019,010원 이하	5,289,184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385,037원 이하	6,022,812원 이하	6,347,020원 이하

가.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산정
다.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이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라.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마.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바.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사.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아.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위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많은 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비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포함)에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공급세대 : 주택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13세대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 이혼 ·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 에서 발급가능). 단, 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일반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앤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 입양의 경우: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1순위 청약자격 입증서류로 청약예금 가입증명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 에서 발급가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2013.03.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인자를 포함)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전라남도 내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의 거주자는 본 아파트 1,2순위에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 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감점은 적용됨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85㎡이하 주택형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2013.03.15) 전일까지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신청 전까지 신청가능면적을 85㎡이하 또는 102㎡이하로 선택한 자 · '80.8.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변경공고(2013.03.15)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85㎡초과 주택형	· 85㎡초과 102㎡이하 주택과 102㎡초과 13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2013.03.15) 전일까지 102㎡초과 13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초과 102㎡이하 주택과 102㎡초과 13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가점제/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주택형	· 위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공통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와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당해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과 관련, 별표 1의 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의거 85㎡초과 102㎡이하의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013.03.21(목)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인터넷: 08:00~17:30	* 일시 : 2013.03.28(목) * 장소 : 동림IC 대광로제비앙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www.clickdk.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3순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013.03.22(금)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인터넷: 08:00~17:30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체결 후에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1995.2.11>"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경과 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변경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변경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주택형별 ·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 · 2순위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세대에 한해 기타 전라남도 거주자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기타 전라남도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차순위 공급방식은 선순위와 동일함.)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4. 3순위 : 3순위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산정기준

구분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아래 2)항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 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구분	감점항목: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대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단,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 이어야 함에 유의)	
이용방법 및 절차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주택청약⇒인터넷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지점 창구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접수 장소 : 인터넷 또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 인터넷접수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후 익영업일 이후 2013.03.29(금)부터 평일 09:00~16:0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본,지점(단,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분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됩니다.)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 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모델하우스에서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하며 전라남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용면적 85m2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m2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분)
인터넷	이용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주택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3.03.28 ~2013.04.06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913]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3.03.28 ~2013.04.06 (10일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3.04.02(화)~2013.04.04(목)(3일간, 9:30~16:00) · 계약체결장소 : 당현장 모델하우스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 수납은 불가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한국외환은행	630–008264–531	대한주택보증(주)주택금융1센터

· 당 현장은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주택사업보증 및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으며, 이에 본 아파트의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수납을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추후 주택사업보증의 해지로 인한 분양금 관리계좌가 사업주체로 변경될 시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에 대한 안내 및 통보를 할 예정임.)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지정일에 당행 본.지점으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소재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금 별도 준비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 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가점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추첨제)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함.

구 분	융자기관	비고
금융기관	한국외환은행 광산지점	중도금(분양가의 60%)은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함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고지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4년 05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6216㎡	105.6416㎡
발코니 확장공사비	12,000,000	18,000,000
납부계좌	한국외환은행 630–008264–571 대한주택보증(주)주택금융1센터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에서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본 공사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치 아니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는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변경공고상[주택형(m2)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2)× 0.3025 또는 형별면적(m2) ÷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변경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분양 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재 목록,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모델하우스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류 93호선 L=142m, B=10m 소로1류 102호선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L=130m, B=8m 도로개설할 예정이고, 사업부지 동서남측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상태로 개설여부 및 개설시기는 당사와 무관하며, 이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 101동, 102동, 103동, 107동은 남측면에 호남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방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차량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모델하우스,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 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은 미개발 또는 개발 중인 사항으로 분양 시점에 표현 된 조감도, 배치도 등의 주변 사항은 다를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의 도로(지하 주차장의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 출입구 와 부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로로 구획되어 활용 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층은 층별 대조합의 탑상형 및 판상형 동 배치로 인접 세대 위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 할 수 없음
· 일부세대 정면부에는 노인정 및 보육시설,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세대 정면부에 지하 주차장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썬큰이 설치되므로 지하 차량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세대에는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생활 소음 및 후면에서 주동 출입시 보행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면 상가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 시공 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세대중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인접지대와 만나는 주변 부위는 분양 시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단지모형물에서 표현된 모습과 현장 시공 후 단지 레벨차이 또는 시공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히, 보행자 출입구 또는 보도, 단지 내 산책로 등은 조성에 따른 선형 및 바닥 패턴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는 구조물(옹벽 등)이 형성될 수 있고 도로변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확보가 어려워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권 확보,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 및 설계도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세대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인근 송전탑)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창틀)이 동급제품으로 변경시공 될 수 있음
· 확장별 발코니 외부 이중창의 경우 유리 사양은 외부:16mm 복층 유리, 내부:16mm 복층유리로 시공 됨
· 확장 되지 않은 안방 발코니 외부 단창의 유리 사양은 외부 창호 16mm 복층유리,내부 분합창 16mm 복층유리로 시공 됨
· 견본주택에 설치 된 온도조절기, 홈네트워크, 가스보일러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확장세대의 외부발코니 난간대는 규정에 의거 방화판이 시공 됨.
· 사업부지 주변에 호남고속도로가 위치하여 방음벽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거실 우물 천정의 size는 조정 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 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 디자인 등은 카드로그에 의거 시공함
· 각 세대 발코니에는 발코니 선 홈통이 설치되고,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선 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외부 발코니 샤시는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업체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 세대에 설치 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 주택 소방 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됨
· 욕실장 및 싱크대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 되지 아니 함 · 씽크대 하부 및 침실 붙박이장 하부는 강마루가 시공 되지 아니 함
· 씽크대 후면, 침실 붙박이장 후면 등에는 천정 몰딩 및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아니 함
· 옥상에는 옥상 층(다락 방)이 설치되어 지며, 이는 이후 설계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다락방은 옥상 구조물에 의해 채광 및 조망에 저촉 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기존층에서의 설치되므로 일부가구및 침실크기가 변경됨.
· 최상층 세대의 2층 다락방 마감재는 장판으로 시공 됨
· 아트월 자재는 폴리싱타일로 시공 되어지며 본 공사 시 아트 월 시공법에 따라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정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정 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 보다 안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피난대피소 출입문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화문으로 설치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은 침실을 사용함으로써 침실문은 방화문으로 설치됨.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이는 견본주택과 현장 시공 시 높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현관 전실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회사명	㈜부건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00,000,000	\26,4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대광이앤씨(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주택2002–0145)
시공회사	(주)대광건영(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주택2003–0075)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원)	보증기간
제 01292013–101–0000300호	61,274,528,000	입주자모집변경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1조 제4호)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변경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변경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변경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변경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변경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변경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주택사업(PF)보증에 의한 기재의 의무
① 사업 시행권 양도 등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②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대한주택보증(주)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홈페이지 : www.clickdk.com
■ 사업주체 : 주식회사 대광이앤씨
135811-0085340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72-2 1동
■ 시공사 : 주식회사 대광건영
200111-0160633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7-8
■ 모델하우스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7-2
■ 분양문의 : ☎062-528-7700

※본 입주자 모집변경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